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문화체육과)

|       |                                        |
|-------|----------------------------------------|
| 의안번호  | 제279호                                  |
| 제 출 자 | 양순임 의원 외 12명(2024. 4. 1.)              |
| 의 안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 전문위원 정진만                               |

## 1. 제안이유

2022년 12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규정을 명문화함.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6조)

나.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세분화하여 명시하며,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문화 신설함(안 제6조, 안 제6조의2)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문화체육과

라. 입법예고 : 2024. 4. 4. ~ 2024. 4. 8.

####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됨(2022. 12. 8.)에 따라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 관내 작은도서관은 총 49개소로 공립 14개소(지자체 직영 11개소<sup>1)</sup>, 직영외 위탁 3개소<sup>2)</sup>), 사립 35개소(개인 및 단체 13개소<sup>3)</sup>, 종교시설 10개소<sup>4)</sup>, 법인 2개소<sup>5)</sup>, 아파트 10개소<sup>6)</sup>)가 운영되고 있음.

---

1) 지자체 직영 : 길음2동, 돈암2동, 보문동, 석관동, 성북동, 안암동, 월곡1동, 장위1동, 정릉1동,정릉4동, 종암동새마을문고

2) 직영외 위탁 :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성북이음도서관, 오동숲속도서관

3) 개인 및 단체 : 기쁨이자라는작은도서관, 꿈터작은도서관, 꿈틀도서관, 다슬도서관, 독서예찬 작은도서관, 뒤죽박죽도서관, 북악하늘작은도서관, 성북동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핸드인핸드, 정든마을 작은도서관, 푸른하늘작은도서관, 하늘비전작은도서관

4) 종교시설 : 곶세마리어린이도서관, 돌리네책방, 성광작은도서관, 월만한물가작은도서관, 아띠작은도서관,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우리들문고작은도서관, 은혜로운 작은도서관, 정인교회꿈땅작은도서관, 한뜰작은도서관

5) 법인 : 생명가족작은도서관, 시온성 작은도서관

6) 아파트 : 글빛누리작은도서관, 길음뉴타운푸르지오도서관, 길음동부센트레빌어린이글마당, 래미안석관북카페, 래미안퍼스트하이도서관, 북적book적, 세레니티문고, 어울림북터작은도서관, 월곡두산공감작은도서관, 하늘채 작은도서관,힐스테이트별빛작은도서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 안 제2조제1호부터 3호까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 안 제1호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sup>7)</sup>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sup>8)</sup>으로,
- 안 제2호 “공공도서관”의 정의를 「도서관법」 제2조4호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sup>9)</sup>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7)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8)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9)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안 제3호 “도서관자료”에 대한 정의를 「도서관법」 제2조제2호10) → 「도서관법」 제3조제2호11)로 변경하였음.
- ▶ 안 제6조제1항, 제2항은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을,
- 안 제1항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로
- 안 제2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sup>12)</sup> → 「도서관법 시행령」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1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12)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조<sup>13)</sup>로 변경,

- ▶ 안 제6조의2는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규정을 「도서관법」 제36조<sup>14)</sup>에 따라 신설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

---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14)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됨에 따라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